

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김정환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의사상자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(이하 “의사상자”라 한다)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근거합니다. 의사상자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,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기념사업, 보상금,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서울시도 2011년에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의사상자 조례”라 한다)를 제정하여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시가 설치·운영하는 문화재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, 장사시설·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.

그러나 현재 의사상자 조례에서 규정한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상위법인 의사상자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과 조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